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개편〉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20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순 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05. 01.
3. 회부연월일 : 2025. 05.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 <u>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u> 」 제38조에 따른 <u>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u>	8. 「 <u>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u> 」 제42조에 따른 <u>행정수도건설청</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행복청의 설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¹⁾ 이 법 제2조 제2항제8호에서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²⁾

행복청이 건설을 추진하는 행복도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10. 삭제 <2017. 10. 24.>

11. 위원회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삭제 <2017. 10. 24.>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7. (생략)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생략)

③~⑩ (생략)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를 말하는데,³⁾ 행정구역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함.⁴⁾

행복도시는 당초 2004년에 제정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로 추진⁵⁾되었는데, 당시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며,⁶⁾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련 주요 장관과 국회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제7062호, 2004.1.16.제정, 2004.4.17.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제7062호, 2004.1.16.제정, 2004.4.1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주요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결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헌법기관을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등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기관이었음.⁷⁾

그런데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따른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이 법은 헌법의 개정⁸⁾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사항을 하위의 일반법률로써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⁹⁾

7)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제7062호, 2004.1.16.제정, 2004.4.17. 시행)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9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농림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

3.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제34조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인력 · 자료 ·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법」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후속 입법으로 2005년에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었는바, 이 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과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그리고 행정부 외의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으며,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였음.¹⁰⁾

9)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발췌)

-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91호, 2005.3.18. 제정, 2005.5.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3. (생략)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통일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자치부
6. 여성가족부

③·⑥ (생략)

「행복도시법」에 따른 행복도시 건설 추진으로 현재 행복도시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대통령과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¹¹⁾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은 서울과 과천에, 관세청·조달청 등 8개 기관은 대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청주에, 재외동포청·해양경찰청은 인천에, 농촌진흥청은 전주에,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에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각각 소재함.¹²⁾

행복도시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인근의 대전 및 청주에도 10개 기관이 있으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및 일부 부처가 서울 및 과천에 남게 되면서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행복도시 이전 초기부터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② 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소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둘 수 있다.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3. (생략)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 ③·⑥ (생략)

12) 방위사업청은 대전과 과천 두 지역에 모두 포함함.

- 방위사업청은 2023년 청장, 차장, 조직인사담당관,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기획조정담당관 소속 일부 부서(정책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가 대전으로 이전하여 현재 대전 및 과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체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수행 시간 부족,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¹³⁾

【중앙행정기관 소재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이전연도	연번	기관명	소재지
1	기획재정부	세종	‘12년	22	외교부	서울
2	교육부		‘13년	23	통일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년	24	국방부	
4	행정안전부		‘19년 (본부기준)	25	여성가족부	
5	국가보훈부		‘13년	26	검찰청	
6	문화체육관광부		‘13년	27	경찰청	
7	농림축산식품부		‘12년	28	금융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부		‘13년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보건복지부		‘13년	30	원자력안전위원회	
10	환경부		‘12년	31	법무부	경기 과천
11	고용노동부		‘13년	32	방송통신위원회	
12	국토교통부		‘12년	33	방위사업청	
13	해양수산부		‘12년	34	관세청	대전
14	중소벤처기업부		‘21년	35	조달청	
15	인사혁신처		‘16년	36	통계청	
16	법제처		‘14년	37	병무청	
17	국세청		‘14년	38	문화재청	
18	소방청		‘16년	39	산림청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	40	특허청	
20	공정거래위원회		‘12년	41	기상청	
21	국민권익위원회		‘14년	42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청주
				43	질병관리청	인천
				44	재외동포청	
				45	해양경찰청	
				46	농촌진흥청	전북 전주
				47	새만금개발청	전북 군산
				48	우주항공청	경북 사천

자료: 행정안전부

13) “‘세중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중앙일보, 2018.10.10.,
“세종 중앙부처 공무원 서울출장 비효율 손본다, 이 총리 실효대책 주문”, 중도일보, 2019.2.19.,
“한국판 뉴딜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
특별위원회, 주관: 세종특별자치시, 2020.7.14.,
“‘길장관·길차관’, 12년 행정 비효율 바로잡는다”, 문화일보, 2024.3.27.,
“[시론] 국회 완전 이전, 선거철 깜작 공약 안되려면”, 중앙일보, 2024.4.4. 등 다수 언론보도 참고

이에 개정안은 현행 행복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개편하여 행복도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고 현재의 행복도시 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 비효율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¹⁵⁾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복도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제22조의4¹⁶⁾¹⁷⁾를 삭제하여 국회 본원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행정수도에 국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및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¹⁹⁾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319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5)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318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6) 「국회법」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7) 국회는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복도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회법」 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318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하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수도"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7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9)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318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과 달리 일부 부처를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음.

첫째, 개정안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42조에 따른 행
정수도건설청²⁰⁾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
토교통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²¹⁾에 따르면 법
률의 개정보다는 헌법의 개정이나 국민의 종합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
는 국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임.

앞서 언급하였듯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결
정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수도의 이전이고, 수도의 이전은
헌법개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2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318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42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
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성문의 조항과 다른 것은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
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
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
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
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문 의 처
02)6788-5339